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9. 3. 19.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3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60회 임시회 제 1 차 위원회 ('99. 3. 1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문화체육과장 김 영 남

가. 제안이유

현재 규정에는 신문발행일이 매월 1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매월 반상회날에 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신문발행일을 반상회날로 개정하고, 유료광고료 산정기준이 타 광고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책정되어 그동안 광고수주가 전혀 없어 광고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므로써 광고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신문 발행 비용의 일부라도 보전도록 하며, 광고료 납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고료의 납부 방법을 선납제로 개선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매월 1일로 되어 있는 신문 발행일을 매월 반상회날로 변경 (안 제4조)
-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내교장 마포' 편집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제재 가능토록 함 (안 제11조 제2항)
- 광고주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료 산정기준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함 (안 제11조 제3항 관련, 별표)

- 유료광고료 납부방법을 선납제로 하며 광고료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토록 함 (안 제11조 제4항 및 제6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인 “내교장 마포”를 발행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 재정수입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4조에는 구정신문 발행일을 매월 1일에서 실제 발행일인 매월 반상회날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의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 (마포개발공사)의 광고도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3항 관련 별표에 규정된 광고료 산정기준은 타 자치단체의 광고매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별 기준요금 단가도 1면의 경우(1단×1cm)를 기준으로 현행요금 23,400원 보다 44.4%가 인하된 13,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광고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하였으며, 신문 발행부수도 10만부를 기준매수로 하여 발행부수가 증감할 경우에는 10,000부당 1할의 광고료를 증감하도록 하고 흑백광고료는 신문발행을 흑백으로 하는 경우에만 칼라 광고료의 3할을 할인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비교적 광고료가 비싸고 장기간 고정 계재되는 돌출흑백(칼라) 광고료 산정 기준은 삭제하였음.
- 안 제11조 제4항에서 광고료 납부방법은 미납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납제로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광고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 재정수입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로 볼 때 타 광고에 비해 광고효과도 높고 광고료도 비교적 비싼 돌출광고료 산정기준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조영천 위원) : 구정신문 발행관련 연간 예산은?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기획료를 포함하여 연간 8천만원임.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현행 구정신문 규격을 일간신문과 같은 규격으로 크게 할 용의는?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검토하겠음.
- 질의요지(홍성환 위원) : 현재 구정신문을 몇부 발행하는지?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10만부 발행하여 약 92%를 배부하고 있음.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우리구에서는 광고료 수입이 있었는지?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없었음.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구정신문은 공공성이 우선이 되어야 함. 광고수입을 위해서 신문면수를 증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알겠음.
- 질의요지(유남렬 위원) : 구정신문의 1면정도는 의원 의정활동상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할애할 용의는?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의원 의정활동상을 최대한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으나, 신문편집상 1면을 고정으로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곤란함.
- 질의요지(김영식 위원) : 우리구 의원관련 기사도 어느 의원은 상단, 어느 의원은 하단에 게재하고 있는데, 형평에 맞게 게재도록 하기 바람.
- 답변요지(김영남 문화체육과장) : 편집기술상의 문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는바,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반영도록 하겠음.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어느 1면을 전용으로 할애하여 의원 의정활동 내용을 게재할 용의는?
- 답변요지(문충실 행정관리국장) : 고정활용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 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출년월일 1999. 3.

제출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에는 신문발행일이 매월 1일로 되어있으나 실제는 매월 반상회날에 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신문발행일을 반상회날로 개정하고, 유료광고료 산정기준이 타광고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책정되어 그동안 광고주가 전혀 없어, 광고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므로써 광고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켜 신문발행 비용의 일부라도 보전토록 하며, 광고료 납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고료의 납부방법을 선납제로 개선코자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골자

- 가. 매월 1일로 되어 있는 신문 발행일을 매월 반상회날로 변경(안 제4조)
- 나.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내고장 마포' 편집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 가능토록 함.(안 제11조 제2항)
- 다. 광고주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광고료 산정기준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조정 함.(안 제11조 제3항 관련, 별표)
- 라. 유료광고료 납부방법을 선납제로 하며 광고료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토록 함(안 제11조 제4항 및 제6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5.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수반 여부 : 해당없음

첨부 :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매월 1일”을 “매월 반상회날에”로 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관련, 별표 “광고료 산정기준”을 별지와 같이하며, 동조 제6항중 “수납 등에 관하여”를 “선납제에 따른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광고료 수납, 광고료 환급 등에 관하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제재를 할 수 있다.

④유료광고의 광고료는 선납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광고료 산정기준

(단위 : 원)

구 分	면 별	규 格 (1단:3.3cm)	금 액	면별기준요금(단가) (1단×1cm)
칼 라	1면	3단×24cm	936,000	13,000
	끌면	3단×24cm	720,000	10,000
	그외면	3단×24cm	576,000	8,000

【비 고】

- (1) 발행 기준매수는 100,000부로 하며 발행부수의 증감시 매 10,000부당 1할의 광고료를 증감한다.
- (2) 흑백광고는 신문발행을 흑백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칼라광고료의 3할을 할인한다.
- (3) 3개월이상 장기 계약시의 광고료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발행일 등) 신문은 월 1회, <u>매월 1일</u>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발행일 등) <u>매월 반상회날에</u>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생략) ②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게재를 할 수 있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④ 광고료를 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완납시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연 15퍼센트이하의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유료광고의 광고료는 선납제로 한다.
⑤(생략)	⑤(현행과 같음)
⑥ 유료광고에 대한 운영방법, 계약 및 광고료 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선납제에 따른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광고료 수납, 광고료 환급 등에 관하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광고료 산정기준					광고료 산정기준									
(단위 : 원)														
구 분	면 별	규 격 (1단:3.3cm)	금 액	면별기준요금 (단가)	구 분	면 별	규 격 (1단:3.3cm)	금 액	면별기준요금(단가) (1단×1cm)					
흑백	1면	3단×23cm	1,242,000	18,000	작제									
	2-3, 8면	3단×23cm	1,138,500	16,500										
	기타(4-7면)	3단×23cm	1,035,500	15,000										
칼라	1면	3단×23cm	1,614,600	23,400	칼라	1면	3단×24cm	936,000	13,000					
	2-3, 8면	3단×23cm	1,480,050	21,450		끝면	3단×24cm	720,000	10,000					
	기타(4-7면)	3단×23cm	1,345,500	19,500		그외면	3단×24cm	576,000	8,000					
돌출흑백 (고정)	1면	6cm×6cm	453,600	12,600	작제									
	2-3, 8면	6cm×6cm	415,800	11,500										
	기타(4-7면)	6cm×6cm	378,000	10,500										
돌출칼라 (고정)	1면	6cm×6cm	589,680	16,380	작제									
	2-3, 8면	6cm×6cm	540,540	15,015										
	기타(4-7면)	6cm×6cm	491,000	13,650										
[비고]														
(1) 12면이상 발행시에는 마지막면은 위 구분란의 해당 8면 가격을 적용하고 마지막면의 2번째 앞면까지는 위 구분란의 해당 2,3면의 가격에 1할을 할인한 가격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기타면의 가격을 적용한다.														
(2) 3개월이상 장기 계약시의 광고료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비고]														
(1) 발행 기준매수는 100,000부로 하며 발행부수의 증감시 매 10,000부당 1할의 광고료를 증감한다.														
(2) 흑백광고는 신문발행을 흑백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칼라광고료의 3할을 할인한다.														
(3) 3개월이상 장기 계약시의 광고료는 위 기준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														